

의안번호	제 45 호
의결연월일	2004. 10.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10. 15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5 호
----------	--------

제출일자 2004. 10. 1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농업개발시설의 운영목적중 현장 학습체험장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 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

### 나. 운영목적중 현장 학습체험장 추가

### 다. 인용 조례명 및 용어 정비

- 지역농업개발센터 ⇒ 농업개발시설
- 용어의 정의 ⇒ 정의
- 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 ⇒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 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4. 9. 17 ~ 2004. 10. 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중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업개발시설”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 농업인 교육·영농상담·현장 학습체험장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농업개발시설”이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하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 역할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업개발시설”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현장 학습체험장

제4조제1항중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업개발시설”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중 “명에 의하여”를 “지시를 받아”로 하며, 같은조제3항 단서중 “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를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중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각각 “농업개발시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 제목중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각각 “농업개발시설”로 하고, 별표 2 시설명란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의 운영방법란중 “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를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4조(운영) ① <u>지역농업개발센터</u>를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u>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u>에 의한다.</p>	<p>제4조(---) ① 농업개발시설은 ----- <u>지시를 받아 -----</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u>에 의한다.</p>
<p>제5조(교육훈련) ① <u>지역농업개발센터</u>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 ① 농업개발시설은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요경비) <u>지역농업개발센터</u>의 설치·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에서 충당한다.</p>	<p>제6조(-----) <u>농업개발시설</u>----- ----- -----</p>
<p>[별표1] 제목 <u>지역농업개발센터</u>표준시설및장비확보기준표</p>	<p>[별표1] 제목 <u>농업개발시설</u>표준시설및장비확보기준표</p>
<p>[별표2] 제목 <u>지역농업개발센터</u>시설운영방법</p>	<p>[별표2] 제목 <u>농업개발시설</u>운영방법</p>
<p>[별표 2] 시설명란의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의 운영방법 <u>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u></p>	<p>[별표 2] 시설명란의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의 운영방법 <u>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u></p>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 방 자 치 법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3.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